



KT&G 이사회 독립성 및 다양성 정책



KT&G BOARD INDEPENDENCE AND DIVERSITY POLICY



KT&G 이사회 독립성 및 다양성 정책

「이사회 독립성」 정책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KT&G”)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개별안건으로 상정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KT&G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KT&G는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 「정관」 제33조, 「기업지배구조현장」 제2.2조 등 관계 법령과 사규에 의거하여 독립성이 검증된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KT&G의 임직원이 아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KT&G의 임직원이 아니었던 사람
- ② KT&G의 계열회사의 임직원이 아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그 계열회사의 임직원이 아니었던 사람
- ③ 「SEC Rule 4200 Definitions」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으로부터 투자, 자선활동 등을 포함한 연간 미화 6만 달러 이상의 보상을 받지 않은 사람
- ④ KT&G의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이 아닌 사람
- ⑤ KT&G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KT&G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아닌 사람
- ⑥ KT&G와 자문계약 또는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 ⑦ 최근 사업연도 중에 KT&G와 매출총액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 ⑧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KT&G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 이상인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 ⑨ KT&G 또는 KT&G의 임원과 개인적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 ⑩ KT&G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 ⑪ 그 밖에 KT&G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며, 이사회에서 독립적이라고 간주할 수 없는 기타 이해 상충 관계가 없는 사람

「이사회 다양성」 정책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KT&G”)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 「기업지배구조현장」 제2.4조 등 관계법령과 사규에 의거하여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동시에 회사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를 이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이사회는 그 구성에 있어 학력, 나이, 국적, 인종, 민족, 성별, 종교, 출생지 또는 직책과 같은 배경에 대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 ② 이사회는 경제, 경영, 법률, 금융, 제조, 정보기술, 신성장 분야 등 기업 또는 투자기관의 독립 이사 또는 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현장 경험 또는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됩니다.
- ③ 이사회는 이사회가 가진 다양성이 독립 이사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의해 수렴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또는 임시로 회의를 소집합니다.
- ④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다양한 업무 경험, 전문성 등이 균형 있게 수렴되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합니다.